

# 토론문

“제 7 회 연구자복지법 토론회”, (사)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2023.12.23(토)

이미에: (사)연구자의 집 운영위원, 한신대 사회학과 강사

“공제회법의 취지와 성격”(정두호)과 “법안의 구조와 내용”(윤희상) 발표문에 대한 의견 및 질문은 몇 가지 키워드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 토론문은 토론자가 법안이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그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의 얘기를 반복하는 것일 수 있음을 양해 바란다. 이 글은 토론자가 ‘비정규직 강사’로서의 위치에서 작성한 것이다.

## 1. 대상: 연구자 공제회법안 제 1 조(목적), 제 2 조(정의), 제 7 조(회원의 자격)

### 관련

제 7 조제 2 항제 1 호에 의하면 회원 자격으로 학술진흥법 제 2 조(정의)의 “연구자”에 포함되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정/불안정 연구자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 법의 목적은 ‘불안정 연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두고 있어 이 법의 대상이 헛갈린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지, ‘불안정 연구자’에 한정하는 것인지 제 7 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안정’ 연구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 ‘안정’ 연구자로 가기 위한 한시적/과도기적 상태인 것인지, 아니면 특정 연구자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학술진흥법에 따르는 학술진흥 목적에서의 나열식 연구자의 정의가 아닌, 안정적 연구 수행 환경에서의 연구자의 위치매김 속에서 연구자 및 ‘불안정’ 연구자도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향후 연구자복지법 및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등 기본법, 상위법에서의 연구자의 위상 및 노동자성 논의로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내용: 동법안 제 25 조(공제회의 사업) 관련

공제회의 사업 내용은 ‘불안정 연구자’의 복지의 요구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충분한가?

플랫폼노동자 공제회의 사례를 참조하면, 공제회 설립 전 현재 일자리에서의 어려움과 사회보험 적용실태, 공제회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실업부조급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며, 업종별/세대별 상이한 요구가 있으므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장진희·손정순·이향숙, 2020: V). ‘불안정 연구자’의 경우에도 시간 강사, 대학원생, 독립연구자 등 위상과 학문 분야 등에 따라 요구가 다를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는 이미 진행되었다면 다양한 경우가 유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실태조사에서는 계약형태와 보수지급방식, 보수결정권자, 월평균 수입 등 소득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고 있는데(장진희·손정순·이향숙: 8), 대학의 시간 강사와 연구소(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 수행)의 연구자로서의 토론자의 경험에 의하면 주변 연구자들이 보수의 적정성, 계약형태 등에 대해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 3. 재정 : 동법안 제 18 조(재정) 관련

제 18 조제 1 항제 2 호, 제 26 조(퇴직공제의 가입)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을 명시하고 있는데, 사업주의 부담이 연구자의 부담으로의 전가가 우려되므로 법 또는 시행령을 통해 이를 불식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 수행 시, 연구자가 사회보험(4 대보험) 및 퇴직급여의 본인 및 사업주 부담 모두를 지拂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토론자는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2018~2022 년)에서 관련 조항을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대학측이 한국연구재단의 사업지침을 일반적인 보수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명확한 규정이 요청된다.

아울러 재정 운용의 주기 및 원칙은 빠른 주변 환경의 변화, 세대간 특징,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법의 구조와 체계

연구자 공제회법안은 ‘기본법안’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상위법(사회보험법) 또는 기존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

향후 모순적이고 않고 효율적인 법의 집행을 위해, 추진 예정인 ‘연구자복지법’과 기존에 발의된 ‘기초학술기본법안’(2021 정청래 대표 발의), ‘기초학술기본법안’(2022 강득구 대표 발의),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2023 유기홍 대표 발의), 그리고 사회보험법, 기존 유사 법과의 연계라는 큰 구조 속에서 공제회법이 위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노동자,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이 적용되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등 자유권, 사회권에 대한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 조항(제 6 조제 1 항)에 따르는 예외 사례 및 판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상위법 개정도 하나의 방안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5. 기타 : 동법안 제 31 조(퇴직공제금의 지급) 등

제 2 항제 1 호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뿐만 아니라 동성 배우자를 포함하는 등 기존 가족법이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성애 혈연 중심 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조항의 답습을 피하도록 한다. 이것은 전체 조항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법안 관련 사항으로는 과태료(동법안 제 39 조)가 충분한지, 시행일(동법안 제 41 조)로 6 개월 이후가 적합한지 검토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발표 2>에서 « 단순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worker)’을 넘어선 범주를 요청한다 »(7 쪽)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아래 ‘worker’ 또한 단순한 형태가 아니므로, 노동자 스스로 분할 및 파편화를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 <참고문헌>

장진희·손정순·이향숙. 2020.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설립방안: 플랫폼노동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2020-09』, 한국노총 중앙연구원.